



## 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 일부개정고시 알림

---

1. 관련: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[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-295호('22.6.30)]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
2. 온라인 판매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트포장 제품 판매 시 외포장의 표시 면제 조건을 명확히 하여 이중표시 부담 완화를 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, 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향료 등 표시 방법을 정비하기 위하여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을 일부개정고시(식약처 고시 제2022-66호, 2022.9.6)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3. 각 시·도에서는 관할 시·군·구에 고시 개정사항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라며, 각 기관 및 단체는 해당 부서 등에 이 고시내용을 비치하여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이번 개정고시 내용은 우리 처 홈페이지(<http://www.mfds.go.kr> > 법령·자료 > 제·개정고시 또는 고시전문) 및 식품안전나라(<http://foodsafetykorea.go.kr> > 식품·안전 > 식품표시 > 식품표시정보)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 일부개정고시 1부  
2.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 고시전문 1부. 끝.

## 식품의약품안전처장



수신자 본부 및 평가원, 지방청, 관계 부처, 시·도 관련 부서, 관련 협회·단체, 보건복지위원회 등

주무관 **정현정** 연구관 **문재은** 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 **오재준** 전결 2022. 9. 6.

협조자

시행 식품표시광고정책과- (2022. 9. 6.) 접수  
13261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/ [www.mfds.go.kr](http://www.mfds.go.kr)

전화번호 043-719-2190 팩스번호 043-719 / [silverjung@korea.kr](mailto:silverjung@korea.kr) / 대한민국 공개